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일 박성훈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조세소위(2024.11.15.) 상정

제2차 조세소위(2024.11.18.) 상정

제3차 조세소위(2024.11.19.) 상정

제4차 조세소위(2024.11.20.) 상정

제5차 조세소위(2024.11.21.) 상정

제6차 조세소위(2024.11.22.)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2025. 2.11.)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2.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훈의원)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겪으며, 에너지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탄소배출이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확대됨.

원자력은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인 전력의 핵심 생산원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원자력 발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중이므로, 확대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초격차’ 제작기술 및 제작시설 확보와 차세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 특히, 미래 발전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안정적

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 밖에도 문화·콘텐츠 분야에 있어 신성장·원천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국내 이스포츠 산업은 성장세가 꺾여 현재는 국내 개발 이스포츠 전문 종목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대회까지 줄면서 팀은 재정적 부담과 해체, 선수 및 코칭스태프는 열악한 처우와 고용 불안 등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을 뿐 아니라, 산업 규모는 감소하고 산업생태계는 열악한 상황임.

이에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상 선정된 종목으로 대회를 개최할 경우, 투자·운영에 드는 전반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 활성화를 통한 산업 선순환 및 선수단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구조를 조성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 5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